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11월 26일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1월 13일, 금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24년 11월 13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4년 11월 26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건전한 재정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를 신설하고, 실무자 직급인 7·8급의 정원 비율을 타 자치구 평균 수준에 맞추어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상 7급은 33% 이내로, 8급은 32% 이내로, 9급은 6% 이상으로 조정함 (안 별표 2)
 - 7급 비율: 31% 이내 → 33% 이내 (2% 증)
 - 8급 비율: 30% 이내 → 32% 이내 (2% 증)
 - 9급 비율: 10% 이상 → 6% 이상 (4% 감)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준을 조정함 (안 별표 3)
 - 총 계: 1,208명 (변동없음)
 - 일반 5급 계: 54명 → 55명 (증 1)
 - 6급 이하 계: 1,136명 → 1,135명 (감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박병규

나.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지방공무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안건으로 세무부서 보강에 따른 행정 5급 보직 신설로 일반5급 정원 54명을 55명으로 1명 증액, 6급이하를 1명 감액하고 (총계 1,208명 변동 없음)
- 실무자 직급인 7·8급 의 정원비율을 타 자치구 평균 수준에 맞추고자 정원조례 상 7·8급 비율 상한 기준을 각 2%씩 상향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별표2)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 력 관
비 율 (기 존)	1%이내	6%이내	21%이내	33%이내 (31% 이내)	32%이내 (30% 이내)	6%이상 (10% 이상)	1%이내

- (별표3) 직급별 정원표

현 행					구분	개 정 안					
총 계	집행기관			의회 사무 기구		총 계	집행기관			의회 사무 기구	증감
	본 청	보 건 소	동				본 청	보 건 소	동		
<u>1,208</u>	<u>1,176</u>			<u>32</u>	총 계	<u>1,208</u>	<u>1,176</u>			<u>32</u>	
1	1				정 무 직	1	1				
<u>1,201</u>	<u>1,171</u>			<u>30</u>	일반직 계	<u>1,201</u>	<u>1,171</u>			<u>30</u>	
1	1				3급	1	1				
8	6	1		1	4급	8	6	1		1	
<u>54</u>	32	<u>10</u>	10	2	5급	<u>55</u>	<u>33</u>	<u>10</u>	10	2	증1
<u>1,136</u>	<u>1,109</u>			27	6급 이하	<u>1,135</u>	<u>1,108</u>			27	감1
2	2				전문경력관	2	2				-
<u>6</u>	<u>4</u>			<u>2</u>	별정직 계	<u>6</u>	<u>4</u>			<u>2</u>	-
1	1				5급 상당	1	1				-
5	3			2	6급 상당 이하	5	3			2	-

-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